

1. 개정이유

정신질환자 등의 치료·재활 및 사회적응을 위하여 적당한 육체적 작업을 시키는 치료법을 의미하는 ‘작업요법’이 ‘노동’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오용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, 치료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하여 용어를 ‘작업치료’로 변경한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7217호, 2020. 4. 7. 공포, 10. 8. 시행)됨에 따라,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법 개정에 따라 ‘작업요법’을 ‘작업치료’로 용어를 변경함(안 제5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보건복지부령 제 호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의 제목 중 ‘요법’을 ‘치료’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0. 10. 8.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2조(작업 <u>요법</u>) ① 법 제76조제 1항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작업"이란 입원등을 한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단순 기능 작업을 말한다. ② ~ ④ (생략)	제52조(작업 <u>치료</u>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